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1호

**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
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 변경 고시**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-343호(2019.10.17.)로 변경결정된 「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」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, 아래와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23일
서울특별시장

1. 고시명 :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 변경

2.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

○ 기본계획 변경사항의 유효기간 연장

－ 당초 : 2019.10.27.부터 3년 한시

－ 변경 : 2019.10.27.부터 2025.3.27.까지

(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 수립 시까지)

○ 한양도성 도심부 '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' 적용 제외

○ 상업지역 증가 주거용적률 1/2 공공주택 확보원칙 수립

○ 공공주택 면적기준 조정

－ 당초 :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 수의 60%이상 전용 40㎡이하 확보

－ 변경 :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(전용 85㎡)이하로 확보

3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(☎2133-4635)

○ 서울시 홈페이지 > 서울소식 > 공고 > 고시·공고

※ 인터넷 주소 : http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list/1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2호

**반포아파트지구(반포지구2)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
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(변경),
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**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97호(2002.11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82호(2010.03.11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-1호(2011.01.06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4-67호(2014.05.29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6-128호(2017.01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52호(2017.04.27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-46호(2017.05.18.)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-79호(2017.07.13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-91호(2017.08.17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(반포지구2)에 대하여,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(소) 위원회(2021.12.02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와 「주택법(법률 제6916호)」 부칙 제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6852호)」 부칙 제5조 제3항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23일
서울특별시장

I. 반포아파트지구(반포지구2)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

1. 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: 변경없음

가. 명칭 : 반포아파트지구(반포지구2)

나. 위치 : 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

다. 면적 : 변경없음

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반포아파트지구 (반포지구2)	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	1,145,696.8㎡	-	1,145,696.8㎡	